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25
----------	------

2014년 3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장
-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18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보조공학 전문지식이
나 기술을 활용한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기구 맞
춤수리, 대여, 정보제공,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4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임.
- 위탁동의안은 장애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보조공학서비스 제공을 위
해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및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동의안 제출 배경

-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사무는 민간부문의 보조공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최근 장애는 장애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맞춤개조·유지보수, 사용훈련 등의 제공을 통한 재활보조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 현재 서울에서는 강동센터, 용산센터 등 2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인 의료급여 및 교부사업, 건강보험공단의 공적급여를 통한 보조공학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표〉 시립 보조공학서비스센터 현황

센터명	소재지	면적	종사자수	운영법인
서울시보조공학 서비스센터 (강동구)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317-24)	223.48㎡	5명	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서울시보조공학 서비스센터 (용산구)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효창동 5-134)	276.7㎡	6명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 서울 동북부지역의 경우 장애인의 수가 116,602명(2013년 말 기준)¹⁾으로 서울시 장애인구(403,435명) 중 28.9%를 차지하고 있어,
- 보조공학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민간위탁 근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등에 따른 것임.
-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체결시부터 3년이며, 위탁업무는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사무로서, 맞춤형서비스(상담·평가, 시험착용, 맞춤개조, 제작지원 등), 사후관리(다양한 보조기기 성능 및 사용법 정보 제공, 기립형 전동휠체어, 컴퓨터 보조기기, 식생활 보조기기 등), 대여수리, 기기개발·연구, 기타사업(후원연계를 통한 보조구 교부, 타기관 간 정보공유) 등임.
-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1) 서울시 동북부지역 장애인 수(등록기준)를 보면, 노원 27,985명, 중랑 20,339명, 성북 19,368명, 강북 17,487명, 동대문 16,497명, 도봉 14,926명임.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25
----------	------

제출년월일 : 2014년 2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무로서

나. 민간부문의 보조공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계약체결시부터 3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사무
 - 맞춤서비스 : 권역 내 지역주민 직접서비스 수행
 - 상담·평가, 시험착용, 기기지원(맞춤개조, 제작), 사후관리
 - 전시·홍보 : 다양한 보조기기 성능 및 사용법 정보 제공

- 기립형 전동휠체어, 컴퓨터 보조기기, 식생활 보조기기,
- 레저·스포츠용 보조기기, 실내생활 훈련용 보조기기 등
- 보조기구 전시 체험장 견학 프로그램 및 홍보부스 운영
- 대여·수리 : 기성제품 맞춤수리, 전시 기기 및 맞춤 기기의 대여
- 기기개발·연구 : 보조기기 공모, 보조기구 개발 등
- 기타 사업 : 후원연계를 통한 보조구 교부, 타기관 간 정보공유
- 소요예산 : 393백만원(2014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필 요 성
 - 장애인에게 장애별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팀 권은경 (☎ 02-2133-7457)